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

鄭 址 雄

(서울大 農業教育科)

1. 序 言

오늘날 大學의 3大 機能을 教授, 研究, 社會奉仕로 보는 견해는 국내·외를 막론하여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세 기능을 상징하여 大學의 마크 안에 3각형이 들어간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 세 기능 가운데 제3機能인 社會奉仕(public service) 또는 大學擴張(university extension) 機能은 교수와 연구, 두 기능에 비하여 有名無實한 위치에 있어 大學은 均衡된 발전을 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大學의 세 기능을 교수, 연구, 학생지도라고 보는 誤解를 낳기도 하였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大學이 일부 소수정예단을 양성하기보다는 점차 大衆化 教育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英美式 教育 추세로 나가게 되면서 大學의 社會奉仕的 機能은 국가 발전, 사회 발전을 위하여 직접 기여하는 기능으로 다른 두 기능에 못지 않게 중요시 되고 있다. 이 제3 기능으로 인하여 학생지도를 포함한 教授가 現實에 보다 適合하게 되고, 研究는 더욱 實用化되어 大學教育이 正常化되고 조화 있는 발전이 기약된다는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와 같은 주장, 즉 제3 기능으로서의 社會奉仕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이 기능과 다른 두 기능과의 관계를 模型化한

후 우리나라 大學의 現實과 그 發展을 위한 示唆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여기에 소개되는 이론이나 주장들은 주로 필자가 1969년에서 1972년까지 필리핀大學校(U.P. at Los Baños)에서 修學하면서 탐구하고 실증 자료를 제시하였던 경험에 터한 것이며 그 이후 15년간 大學에 근무하면서 경험하고 알게된 사항을 토대로 한 것이다.

2. 大學의 社會奉仕機能에 대한 理論의 발달과 실제

소수정예 분자 양성의 수단으로 주로 哲學과 科學에 대한 教授만을 강조하던 유럽의 전통적 大學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커다란 도전을 받았다. 영국에서는 1870년대에 그 동안 귀족 계층 자녀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던 캠브리지대학, 런던대학, 옥스포드대학 등이 成人에 대한 수강을 허용하면서 教授開放 중심으로 大學의 사회봉사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890년에 이르러 범국가적 운동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영국은 오늘날 모든 國民에 대한 大學教育(university education for all)을 표방하고 開放大學(open university) 체제를 중심으로 그 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 거의 모든 大學마다 成人教育科와 社會教育센터(Center for

Extra-Mural Activities)를 두고 관계 당국과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관련 지역 주민 또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해 오고 있는 미국은 1880년대 초에 英國型의 大學開放을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소개·전파하기도 하였고, 이에 앞서 쇼토쿠와(Chautauqua) 운동과 州立大學中心의 農村指導事業이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의 주종을 이루면서 영국보다는 더욱 광범하게 그 기능을 발전시켰다. 이로써 大學의 발전과 社會의 발전을 동시에 이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1874년 한 감리교 목사 J.H. 빈센트에 의하여 시작된 쇼토쿠와 운동은 미국의 기독교 재단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던 대부분의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을 중시하고 수행하게 만드는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그러한 기능을 강조하던 많은 學者들을 여러 大學의 名總長으로 輩出し키기도 하였던 것이다. 예컨대 시카고大學의 하퍼(W.R. Harper), 미네소타大學의 빈센트(G.E. Vincent), 존스·홉킨스大學의 길먼(D.C. Gilman), 위스컨신大學의 반 하이스(C.E. Van Hise), 스텐포드大學의 조르단(David Jordan) 총장들이 곧 쇼토쿠와 운동으로서의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을 주장하였고 大學行政家로 그 기능을 강조, 실천하여 大學을 발전시켰으며 社會發展에도 크게 기여하여 명성을 얻었던 總長들이었다.

특히 미국의 大學에서 社會奉仕機能을 수행하여 大學은 大學대로 크게 發展시켰고 그 大學이 위치한 州의 住民을 위한 다양한 봉사과 교육 활동을 펴으면서 社會發展에 기여한 제도는 1862년 링컨大統領 治下에서의 모릴法에 의한 州立大學 支援體制(land-grant college system)로서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에 의하여 각 州에는 農科大學을 중심으로 하는 州立大學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상당한 土地를 주고 經費를 지원해 주면서 그 州內의 農民을 위한 農村指導事業(cooperative extension service)을 펴도록 하는 責任과 義務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계속 발전하여 1914년 스미스-레버法의 제정과 함께 현재와 같은 州立大學 중심의 協同農村指導事業, 즉 農務省, 州立大學, 地域住民의 3者間 協同事業體制를

이루게 한 것이며 미국의 農業 및 農村發展을 이룩한 가장 큰 社會教育의 主體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때문에 農科大學으로 출발된 대부분의 州立大學은 오늘날과 같은 世界的 綜合大學으로 확장·발전되었다. 그 社會奉仕의 機能도 農村指導만이 아니라 全分野에 걸쳐 계속 확장, 강화되었다. 1940년대에는 이러한 기능이 地域 社會開發에까지도 미치게 되어 몬테나大學이 실시한 지역사회 개발 사업을 보고 포스톤(R.W. Poston)과 같은 학자는 그 사업을 주관한 브라우넬(B. Brownell)을 가장 훌륭한 지역사회 개발 형태를 제시한 元祖라는 찬사까지 보낸 바 있다.

이렇듯 발전된 미국 대학의 社會奉仕 기능은 미국 모든 大學이 制度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가장 보편적인 활동은 大學內에 부설된 社會教育센터(CEC: Continuing Education Center)에서의 다양한 社會教育 및 地域社會奉仕이다.

이러한 英·美 중심의 大學開放 및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 制度化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에서의 미국 州立大學體制(land-grant system)의 적용,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文教長官協議機構(SEAMEO) 가입국에서의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 강조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1960년대 필리핀大學의 農科大學長이 되면서 이 大學이 위치한 로스바노스(Los Baños) 캠퍼스를 크게 발전시키는데 主役이었던 우말리(D.L. Umali)는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운영되거나 지원을 받는 大學들이 國民大衆을 위하여 무엇인가 知的인 資源을 최대한 活用하면서 奉仕해야만 할 것을 그의 大學行政 哲學으로 삼고 일한 결과 불과 10년만에 이 캠퍼스를 世界 및 아시아地域 農村開發센터로 손색이 없게 발전시킨 것을 인정받기에 이른 것이다. 그가 터득한 사실은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 大學을 그토록 빠른 기간 동안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은 教授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이나 국민을 위한 직접적인 기여만이 아니라 大學에서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學生들에 대한 指導도 現實世界의 바탕 위에서

실제적인 경험에 더하여, 보다 유용하고 설득력 있게 가르칠 수 있게 되고 그 연구도 보다 實用的인 것을 많이 할 수 있어 그야말로 산 知識을 體系化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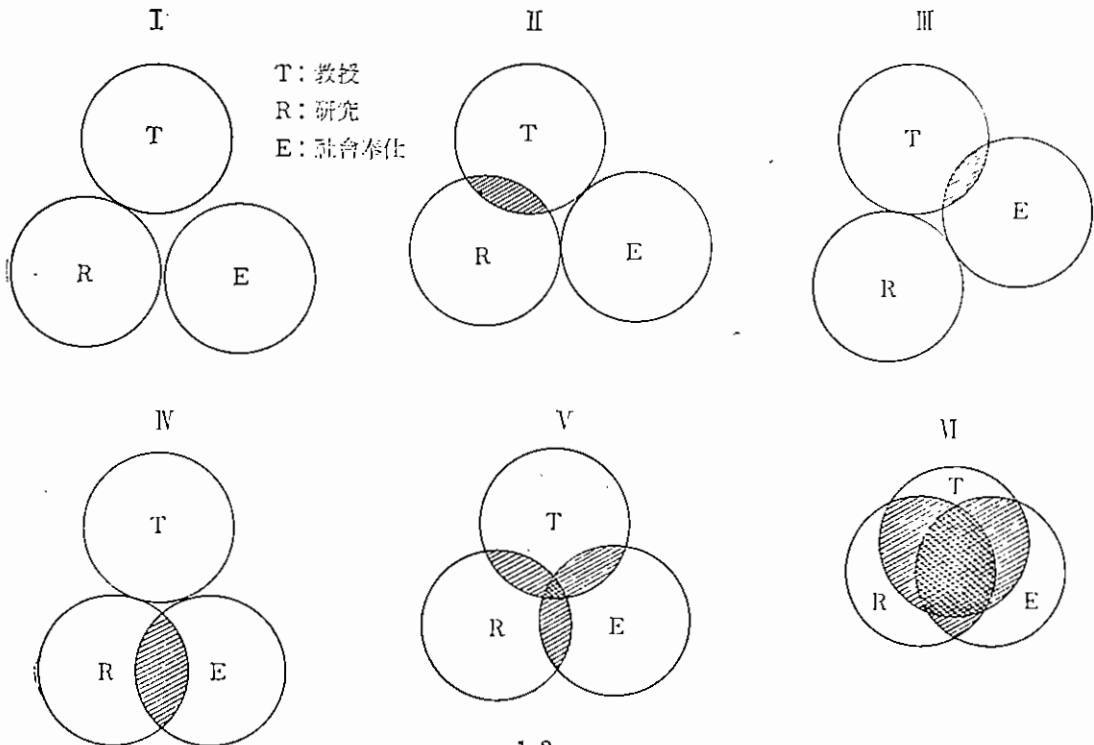
日本을 통하여 독일의 象牙塔的 學風을 造成한 해방 후의 우리나라 大學은 英·美의 영향을 많이 받아 놀라운 양적 팽창과 함께 大衆化의 경향을 띠기에 이르렀으나 學問의 現實化와 社會發展에 직접 기여하는 社會奉仕的 機能은 理論的으로만 받아들여졌을 뿐, 아직 制度的으로 適用하지 못한 位置에 있다고 보아진다. 1970년대 일부 大學에서 市民大學을 열어 社會奉仕의 機能을 수행한 바 있으나 一般化되지 못하였고 1980년대에 와서 社會教育法과 그 施行令 등의 규정과 함께 大學의 社會教育 실시를 위한 法的 基礎가 마련되었고 일부 大學에 平生教育院, 社會教育院, 農民教育院 또는 새 農村營農者養成所 등을 부설 기관으로 설립하고 社會奉仕機能을 社會教育의 형태로 수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그 機能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大學 전체가 그러한

제 3의 機能을 公式的으로 인정하여 制度化한 상태라고 보기란 어려운 실정에 있다.

3. 教授 및 研究와 社會奉仕 기능간의 관계

大學의 3大 機能인 教授, 研究, 社會奉仕間의 관계를 아래 <그림 1>과 같이 6개의 형태로 模型化할 수 있다. 模型 I은 教授, 研究, 社會奉仕의 기능이 서로 관련 없이 수행되고 있는 형태이다. 교수들이 學生들을 가르치는 내용은 한 외국 교수의 교재를 중심으로 하고 그들이 행하는 연구 과제는 그 가르치는 내용과 별 상관이 없다. 또 외부로 나가서 地域社會나 어떤 産業分野에서 도움을 주는 활동은 가르치는 敎科나 다루는 研究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이 모형에 속할 것이다. 흔치는 않지만 大學에서도 교수들이 자신이 專攻하는 敎科를 가르치지 못하고 社會奉仕 활동을 별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이 모형에 속할 것이다. 模型 II는 教授와 研究는 관련이 많은 반면 社會奉仕와는 별

<그림 1> 大學의 세 기능간의 관계 모형(I~VI)



관계가 없는 형태이다. 교수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연구 과제는 국제적으로 尖端的인 分野를 다루지만 우리 現實이 전혀 이를 適用할 만한 水準이 되지 않아 社會發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模型Ⅱ에 속할 것이다. 模型Ⅲ은 教授와 社會奉仕는 관련이 있지만 研究가 이 두 機能과 관련이 없는 형태이다. 大學에서 研究할 수 있는 條件을 갖추지 못하고 學生을 가르치고 외부 집단에 대한 研修에 쫓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가 이 模型에 속할 것이다. 模型Ⅳ는 研究와 社會奉仕는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지만 教授는 다른 두 機能과 관련이 거의 없는 형태이다. 한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이 전공과 다른 반면에 연구하고 외부에 나가 기여하는 분야는 전공과 관련이 된다는가 어떤 大學이 교수들로부터 學生指導에만 역점을 두고 研究와 社會奉仕를 일부 제한된 교수들에게만 하도록 하게 한다면 이 模型에 속할 것이다. 模型Ⅰ은 乖離型이라 말할 수 있고 模型Ⅱ, Ⅲ, Ⅳ는 不均衡關聯型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러한 不完全 模型들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模型들은 模型Ⅴ(均衡關聯型) 및 模型Ⅵ(統合機能型)이 되도록 변해가야 할 것이다. 즉 模型Ⅴ와 같이 教授, 研究, 社會奉仕의 3者 關係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模型Ⅵ과 같이 이 세 機能들이 서로 區別할 수 없을 만큼 統合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統合이 이루어지면 學生과 非學生의 區別이 없이 원하는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大學, 그리고 그러한 教育이 곧 研究의 한 內容이요 過程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機能의 관계 가운데 教授와 研究는 어느 大學에서든지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이제까지 理論적으로는 容認되나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회의적 위치에 있는 教授와 社會奉仕, 研究와 社會奉仕의 두 關聯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첫째, 教授와 社會奉仕의 관계이다. 흔히 大學에서의 教授內容은 現實보다는 理想을 다루어야 하고 이를 가르치는 교수들은 學生들에게 그

러한 理想을 부여하는 고독하고 고매한 人格을 갖추어야 할 것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은 한낱 교수의 권위를 손상, 타락시키는 부질없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즉 大學에서 다루는 學問은 現實과는 거리가 있는 孤島的 位置를 자랑삼고 있다. 특히 哲學의 학문적 기풍을 중시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최근에 약간 달라지는 듯한 인상은 주고 있으나 대체로 그러한 教授의 고답적 存在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實用的 學問의 발달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現實과 동떨어진 學問은 별 가치가 없다고 보며 그러한 學問의 殿堂인 大學은 오로지 상아탑의 位置에 있다고 批判을 가하고 있다. 大學이 가진 상아탑으로서의 이미지는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하며 大學은 現實世界的 문제를 해결하고 社會와 國家를 發展시키는 革新的 位置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大學이 그러한 社會發展 및 國家發展을 위해 직접 기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社會奉仕의 기능을 強化하여 學生들에게 가르치는 教授內容도 現實性(reality) 있고 有用性和 適合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活用할 수 있는 學問을 산 知識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대학의 교수들이 이렇게 산 知識을 學生들에게 가르치려면 우선 교수 자신이 그러한 산 知識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知識은 사실상 社會奉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교육을 가르치는 교수는 유치원을 자주 방문하고 교사들과 많은 접촉을 통하여 현대 아동들의 행동 양식이 어떻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득력 있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교육 담당 교수가 成人들을 자주 접촉하는 경험을 가져야 학생들에게 成人과 접촉할 때의 요령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社會奉仕의 경험이 없으면 그야말로 敎科書 중심의 아무런 소용없는 知識——그것도 때로는 先進國이나 맞는——을 전달하는 역할 수행밖에 못하는 大學이 되고 말 것이다. 社會奉仕의 경험이 자기의 전공과 관련되면, 교수들은 그만큼 學生들에게 보다 有用하고 呼訴力 있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수가 學生들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社會

奉仕에 몰두해서는 교수로서의 기본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研究와 社會奉仕의 관계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大學이 研究의 中心機關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大學보다 研究專門機關을 따로 두어 나라 또는 産業이 필요로 하는 研究를 수행케 하고 大學은 부분적 研究를 주어진 연구비의 범위내에서만 수행하게 하기도 한다. 研究는 보통 새로운 知識을 창출해 내고 새로운 技術을 發明해 내는 機能으로서 大學의 우수한 高級人力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 그 大學이 새 知識이나 技術의 창출보다는 옛 것을 정리하고 보존하는 상아탑적 위치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수가 많아 젊은 知性 人力을 모아 새 研究專門機關을 세우게 되는 경향이 생긴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大學에서 만들어 내고 體系化한 研究物들이 社會發展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實用性(applicability)이 적기 때문에 그 機能의 主導權을 연구전문기관에 빼앗긴 셈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즉 大學에서의 研究가 社會奉仕의 기능과 연관이 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 가치와 기능이 弱化되었다고 볼 수 있다. 大學에서의 研究物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과연 그 가운데 얼마나 社會發展에 적용되고 또 직접 기여하고 있는 지는 자못 의문의 여지가 많다. 研究에 의한 새로운 知識이나 技術이 社會에 普及되지 못하고 死藏된다면 그러한 새 知識과 技術을 만들어 내는데 들 어간 막대한 研究 人力과 경비는 그야말로 浪費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大學의 研究는 그 結果가 生産的일 수 있을 만큼 實用性을 강조해야 할 것이며 知識의 生産에 못지 않게 그 活用이 고려되고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分野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學會誌에 게재되는 것 이외에 그 結果가 아무런 所用이 없는 研究, 즉 社會奉仕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研究는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을 강조하여 社會科學에서는 이른바 現場研究 또는 實踐研究(action research)를 강조하여 研究와 社會奉仕를 統合的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최근에는 參與研究(participatory research)란 새로운 研究

方法을 개발하여 知識人의 現實參與를 강화하고 연구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研究를 장려하는 風土를 조성하고 있다. 또 産業體와 大學間의 産學協同研究, 연구전문기관과 大學間의 協同研究 등을 강화하여 大學의 研究와 社會奉仕間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 關係에서 볼 때, 大學이 大學 자체의 發展을 위하여는 물론이요 종래의 教授와 研究라는 두 고유 기능을 強化·發展시키기 위하여도 제3의 기능인 社會奉仕를 다른 두 기능에 못지 않게 重視해야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4. 우리나라 大學의 社會奉仕 機能

우리나라 大學에서의 社會奉仕 機能은 아직도 一般化, 制度化되지 못한 채 제한된 일부 大學 또는 篤志家の 努力으로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歷史적으로 보면 이미 1920년대 말부터 言論機關과 협력하여 브나로드 운동을 일으켜 大學生들로 하여금 農村에서 國民啓蒙 및 國語教育을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행한 바 있고 이러한 大學生들의 啓蒙 및 奉仕活動은 夜學, 방학중 農村奉仕活動 등으로 그 脈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大學의 公式的 社會奉仕 활동으로 보기에는 未洽한 점이 많다. 물론 이러한 활동에는 일부 교수들의 個別的 關心과 支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大學이 公式的으로 그러한 機能을 수행한 努力은 1960년대 중반 梨花女大에 의하여 실현된 바 있다. 당시의 金活蘭 총장은 大學內에 社會教育委員會를 조직화하고 정규 선택 교과목으로 '社會教育'을 부여하고 수강생들에게 農村奉仕生活 과정을 의무화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女大에서는 모든 學生에게 필수 과정으로서의 '農村生活實習'을 이수케 하면서 奉仕의 경험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두 사례가 모두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미 그러한 과정을 폐지 또는 변경시키고 말았다. 한편 1970년대 초에는 당시 啓明大學의 地域社會教育研究所가 大邱市와 협조하여 설립 운영한 '市民大學'을 하나의 模型으로 삼고 水原(서울大 農大), 仁川(仁荷大), 淸州(淸州大) 등과 같은 여러 都

市에서 적용하도록 권장, 수행되었으나 아직도 全國적으로 一般化, 制度化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한편 19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에 편승하여 많은 大學의 교수들이 '새마을技術奉仕團'(현재 각 道廳에서 관장)의 단원이 되어 필요에 따라 現地에 나아가 農民에 대한 技術教育 및 指導活動을 펴기 시작하였고 아직도 그 명맥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大學의 한 公式的인 機能으로서 制度化되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 이 밖에도 中央政府의 각 部處와 地方自治團體에서는 관련되는 大學의 專門教授들을 政策諮問委員 또는 專門委員으로 任命하여 奉仕의 기능을 수행케 하기도 하였다. 農業界에서는 農村振興廳을 중심으로 農業關係機關과 農科大學間의 產學協同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교수들이 研究 및 指導 人力과의 兼職 共同研究 등 몇 가지 활동을 펴고 있으나 이 또한 大學內의 社會奉仕 機能을 制度化하는 데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師範系 大學에서의 初·中等教師 再教育 講習 및 研修를 하나의 制度化된 社會奉仕 기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는 特殊大學院에서의 短期 特別研修課程도 그러하듯, 일반 대중을 위한 사회봉사와는 다른 例外的인 事例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소 특수하게는 農業協同組合이 설립 운영하는 農協專門大學에서 협동조합 임직원을 연수해 온 경우도 있고 1975년에서 1977년까지 서울大 農科大學에서 실천 연구 사업으로 운영하던 農村開發實習場 사업, 醫大 및 保健大學院의 地域保健 사업 등도 大學의 社會奉仕 활동으로 특기할 만한 사례였다. 필리핀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몇 나라에서 적용하였던 장지웬(Chi-Wen Chang)의 농촌 발전을 위한 農科大學에서의 社會實驗場(social laboratory)의 構想을 우리나라에 심어보고자 아시아재단의 지원으로 1975년과 1977년 두 해(1976년은 중단)에 걸쳐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일대 4개 부락에서 몇 가지 사업을 벌였던 農村開發實習場 사업은 성공적으로 지속화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런대로 學生들에게 地域社會開發이나 社會教育을 가르치게 될 때 매우 현실성 있는 教授를 가능케 하였고 많은 실제적인 研究를 행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이 사업을 지켜보던 어떤 地方行政家와 住民代表는 당시에 행해지던, 한 인근 시범 부락에서의 새마을 사업도 이 농촌개발실습장 사업과 같이 주민들과 더불어 가식 없이 행해져야 할 것을 절감한다는 사실을 告白한 바 있기도 하다. 大學의 전문가가 등원되기 때문에 中立的인 입장에서 사업 조정도 잘 된다는 격려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실습장은 마치 농과 학생에게는 농장에서의 실습, 임과 학생에게는 연습필이나 수목원 실습이 필요하듯 앞으로 農村開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農村指導나 地域社會開發 전공 학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되었지만 막상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이 제도화되지 못한 형편에서 이 사업을 지속화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을 계속 받기란 어려웠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事業이 地方의 몇 개 大學에서 아시아재단의 지원으로 실시되었으나 역시 실천 연구 사업에 그쳤을 뿐 大學內의 構造와 機能 變化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이 밖에 市民大學과 더불어 몇 大學에서 개설한 主婦教室(大學), 新婦教室(大學), 老人大學 등의 사회교육 활동들이 몇몇 교수들의 헌신적 노력과 大學當局의 支援으로 행하여진 경우도 있으나 역시 一般化, 制度化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憲法 제29조 5항의 "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해야 한다"란 규정이 생기고 이에 터하여 社會教育法(1982년 말)과 그 施行令 및 施行規程이 제정되면서 大學에서의 社會教育活動이 권장되었다. 이에 따라 몇 개의 大學들이 社會教育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社會奉仕 기능을 制度的으로 받아들여 운영하려는 경향이 늘어났다. 많은 大學들이 社會教育 專門委員 養成에 관련된 教科目을 설치 운영하는 것 이외에 이제까지 실제적인 사회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던 啓明大나 農協專門大는 물론 다른 여러 大學들이 社會教育의 체계적 실시를 위한 부설 기관을 두고 있다. 예컨대 暹州農林專門大學은 '새 農村 營農者養成所'를 설립하고 앞으로 영농에 종사할 青年 男女를 6개월간 집중적으로 합숙 훈련시키고 있다. 이는 특히 慶尙南道廳의 관심과 지원 가운데 계속 수행되어 오고 있다. 이 연수 과정을 거치고 농민 후

계자가 되어 성공적인 영농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專門大學 在學 및 卒業生에게 좋은 자극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 大學에 많은 活氣를 부여하고 있다. 또 大邱大에는 1970년대부터 실시해 오던 老人大學 운영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회교육까지도 강조하기 위하여 '平生敎育院'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梨花女大도 주로 主婦 및 女性勤勞者들을 위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平生敎育院'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德成女大도 캠퍼스 이전에 따라 여유가 있는 서울 시내 운니동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平生敎育院'을 세우고 여성을 위한 사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 明知大에도 社會敎育院을 설립하고 다양하고도 특수한 사회교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社會奉仕의 기능을 個人的으로 수행하였거나 平生敎育院 및 社會敎育院의 운영에 참여한 많은 大學의 교수들 또는 大學行政家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전공의 다양성을 막론하고 한결같이 學生들을 가르치는 것 이상으로 보람을 갖게 되고 가치 있는 경험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이 學生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설득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研究를 實用化하는 데도 관련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社會奉仕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교수들은 더욱 교수로서의 資質을 높이고 大學의 발전과 社會의 발전을 위하여 동시에 기여하고 있으며 더욱 바쁜 生活를 하고 있음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外部로부터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그러한 有能한 교수들의 奉仕나 專門活動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커지는데 비하여 오히려 大學當局의 위치는 소극적이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점이다. 특히 최근의 大學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不安定性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現存하는 敎授 再任用 制度下에서 구태여 번거롭고 학교 당국에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奉仕活動을 펴면서 不利한 입장에 서고 싶은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學校行政의 면에서 그러한 社會奉仕의 기능을 수행하는 公式的인 기구나 경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교수들의 社會奉仕 활동이 敎授나 研究

와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교수들의 業務에 계산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당면한 現實이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大學처럼 大學의 울타리가 뚜렷하고 正門의 出入者가 엄격히 統制되는 경우는 先·後進國을 막론하고 드물 것이다. 外部人은 물론이요 때로는 교수나 學生들까지도 학교를 出入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을 강조한다는 것은 다소 걸맞지 않은 主張이 되거나 없을까 우려도 된다.

5. 結論 및 提案

어려움이 많겠지만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은 앞으로 더욱 強化되어 敎授와 研究 기능을 보완시키고 이를 더욱 實用化, 現實化시키는 촉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大學敎育의 正常化와 함께 모든 敎育은 한결같이 나라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터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大學의 社會奉仕 기능을 強化하기 위하여 다음 다섯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각 大學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社會奉仕의 機能을 수행하거나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나 부서를 두도록 한다. 현재 大學의 行政組織에는 사회봉사 업무를 따로 관장하는 부서가 거의 없는데 이를 敎務, 研究, 社會奉仕 업무의 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 大學에서 세운 바 있듯이 平生敎育院이나 社會敎育院을 세워 이를 중심으로 그러한 社會奉仕 업무를 조정하고 掌理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大學의 교수들은 일정 시간 學生을 가르치고 적어도 年 1편 이상 研究論文을 발표하는 것 이외에 一定時間 또는 期間을 두고 社會奉仕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것을 원할 때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도록 한다. 전공과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 학기중에는 週中 2日 정도는 社會奉仕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機會를 公式的으로 인정하거나 그러한 일을 하도록 주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學內에서 敎授와 研究業務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교수들은——예컨대 관련 보직을 가진

경우——그러한 기간의 半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해외 연수나 社會奉仕를 위하여 출장을 나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교수들이 관련짓는 社會奉仕活動은 되도록 그들의 研究와도 관련 또는 통합된 형태로 수행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大學에서 6년간 근무하면 1년간 安息年 휴가(sabbatical leave)가 제도화되는 경우도 있고, 國立大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자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간 동안의 社會奉仕와 研修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세째, 모든 大學은 어떤 형태로든지 특성 있는 社會奉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作成하고 이를 운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施設은 기존 시설을 극대화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施設——그 명칭은 社會奉仕館, 社會敎育센터 등 결정하기에 달려 있을 것임——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별도의 시설을 가질 경우는 필요한 사무실과 敎育場은 물론 가능한 한 일정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舍宿施設을 갖추면 더욱 좋을 것이다.

네째, 大學이나 교수를 평가하는 항목에는 敎授와 研究와 같은 比重을 둔 社會奉仕 기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평가 항목에서 大學의 社會的 寄與나 교수 개인의 사회적 봉사 활동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겠지만 敎授와 研究에 비하여 별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敎授의 영역에 속하는 學生指導가 잘 되고 있는가에 力點을 두고 大學 전체나 교수 개인이 평가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한 評價基準에 건전한 社會奉仕에의 寄與가 더욱 큰 비중을 두고 반영되면 大學이 조화된 발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모든 大學의 長期發展計劃이나 運營計劃에는 社會奉仕 기능을 敎授, 研究와 같은 수준의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社會奉仕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受惠集團의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그 集團이 가난하여 그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行政當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文敎部나 地方自治團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財團 또는 政府, 地方自治團體 등—의 지원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大學의 社會奉仕 활동은 결코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렇다고 교수들의 봉사에 필요한 실제적인 경비의 보조 없이 봉사를 강요하는 계획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